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

주체 112(2023)년 12 월 21 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19 호로 채택

제 1 조 (교육후원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후원법은 교육부문에 대한 후원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온 나라에 교육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사회적기풍을 확립하며 교육사업을 발전 시키는데 이바지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교육후원은 교육기관의 건설이나 교육조건과 환경의 개선, 교원의 자질향상 등 교육사업과 그 발전을 위한 사회적지원과 방조이다.
- 교육후원기금은 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기증받은 자금과 물자이다.

제 3 조 (교육후원기풍확립원칙)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조국의 미래를 위하는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열성적인 학부형, 후원자가 되어 교육사업을 적극 후원하는 기풍을 확립해나가도록 한다.

제 4 조 (교육후원사업에 대한 지도)

교육후원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 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교육후원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 5 조 (교육후원조건보장)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교육기관을 적극 후원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 6 조 (교육후원기금의 기증장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후원기금을 기증하는것을 적극 장려한다.

다른 나라 기업, 국제기구, 외국인, 해외동포도 우리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후원기금을 기증할수 있다.

제 7 조 (기증받는 대상)

유치원, 애육원, 소학교, 초급 및 고급중학교, 대학, 재교육기관, 직업기술학교, 청소년체육학교, 예술학원, 학생소년궁전, 소년단야영소, 학생소년회관, 장애자학원을 비롯한 교육기관은 교육후원기금을 기증받을수 있다.

제 8 조 (기증방법)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모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교육후원기금을 직접 기증하거나

교육후원기금관리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교육부서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기증할수 있다.

교육후원기금은 전자결제체계를 통하여 기증할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전자결제체계를 통하여 교육후원기금을 기증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제 9 조 (교육후원기금등록)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교육부서, 교육기관은 교육후원기금접수등록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후원기금의 기증 및 리용정형을 교육후원기금등록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물자인 경우에는 품명, 수량과 함께 국가가격기관이 정한 가격에 따르는 금액을 밝힌다.

제 10 조 (교육후원기금기증확인서발급)

교육후원기금을 접수받은 기관은 기증자에게 교육후원기금기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교육후원기금기증확인서양식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 11 조 (교육후원기금적립)

교육후원기금으로 기증된 자금은 교육후원기금돈자리에 적립하여야 한다.

교육후원기금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교육부서는 해당 은행에 교육후원기금적립을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교육후원기금돈자리에 적립된 자금을 대하여서는 금융봉사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 12 조 (기증물자의 보관관리)

기증물자를 접수한 교육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물자보관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손상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교육후원기금업무관리체계수립)

교육후원기금관리기관은 교육후원기금의 기증 및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후원기금업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 14 조 (교육후원기금의 공급 및 리용)

교육후원기금관리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교육부서는 교육후원기금을 교육기관에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교육후원기금을 정해진 데 따라 교육사업에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

교육후원기금으로 기증받은 자금과 물자는 교육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에 리용할 수 없다.

제 15 조 (후원단체를 통한 교육후원)

후원단체는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사업을 맡아할 사회적의무를 지닌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후원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후원단체의 선정)

후원단체를 선정하는 사업은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후원단체선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이 법시행을 위한 규정에서 정한다.

후원단체를 선정하는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규모와 지역적특성에 따라 한 후원단체에 1~2 개이상의 교육기관을 분담할수 있다.

제 17 조 (후원단체의 임무)

후원단체로 선정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교육기관의 관리운영 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 18 조 (학교지원월간)

3 월과 10 월은 학교지원월간이다.

후원단체는 학교지원월간을 계기로 분담받은 교육기관을 집중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제 19 조 (후원사업정형총화)

내각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학교지원월간을 계기로 후원단체들의 후원사업정형을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20 조 (재정은행기관의 임무)

재정은행기관은 교육후원기금의 돈자리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경제실적평가)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후원단체들에서 교육기관에 후원한 자금과 물자를 경제실적계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2 조 (교육후원기금증서의 수여)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후원사업에서 모범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교육후원기금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 23 조 (평가와 우대)

교육후원사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국가 표창을 하며 견학, 관광 등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취한다.

제 2 4 조 (소개 선전)

출판보도기관은 신문, 방송, TV 등 출판보도수단을 통하여 교육후원사업에서 모범적 인 기 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제 2 5 조 (경고, 엄중경고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 임있는자에 게 경고처 벌을 준다.

1. 교육후원기금의 등록, 적립, 공급을 바로하지 않아 교육후원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교육후원기금기 증확인서 발급, 교육후원기금증서수여 , 평가와 우대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교육기관에 후원한 자금과 물자를 경제실적계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4. 후원단체로서 담당한 교육기관에 대한 후원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 교육후원기금을 교육사업에 효과있게 리용하지 않아 교육사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제 2 6 조 (무보수로동처 벌)

교육후원기금을 류용, 비법 처분하였거나 교육후원기금으로 기증된 물자에 대한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 개월이하의 무보수 로동처벌을 준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 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제 2 7 조 (강직, 해 임, 철직 처벌)

교육후원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 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 2 8 조 (형사적 책 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 적 책임을 지운다.

제 29 조 (시행 일)

이 법은 주체 113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